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KC 2014 - 3 호

2. 기 관 명: ㈜씨티케이

3. 주 소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1번길 52-17(신갈동)

4. 업무수행 범위: 별첨 참조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0년 01월 07일

국가기술표준원
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국가기술표준원장인

정승아 / 전기통신제품안전과 / 2020-01-07 15:05:23

제 KC 2014 - 3 호

분류	품목	세부품목
9.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가. 텔레비전수상기	① 텔레비전수상기
		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
		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
	나. 디스크플레이어	① 디스크플레이어
	다. 오디오시스템	① 오디오시스템
	라. 전자악기	① 전자악기
	마. 오디오프로세서	① 오디오프로세서(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.)
	바. 영상프로세서	① 영상프로세서
	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10.정보·통신·사무기기	가. 모니터	① 모니터
		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
		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나. 프린터	① 프린터(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.)
		비고: 1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 2.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다. 프로젝터	① 프로젝터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
	라. 문서세단기	① 문서세단기
	마. 천공기	① 천공기
	바. 제본기	① 제본기
		② 스테이플러
		비고: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사. 복사기	① 복사기(광원의 정격 출력이 1.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.)
	자.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	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
	차.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 등을 말한다.)	① 디지털TV(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.)
	카. 코팅기	① 코팅기(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.)
	타. 노트북컴퓨터	① 노트북컴퓨터
		② 태블릿PC(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이상인 것에 한정하며,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이상이며, 음성 통화 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.)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파. 전지 (충전지만해당한다)	① 전지
		비고 1.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,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함. 2.교류전원 30V이하,직류전원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하.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